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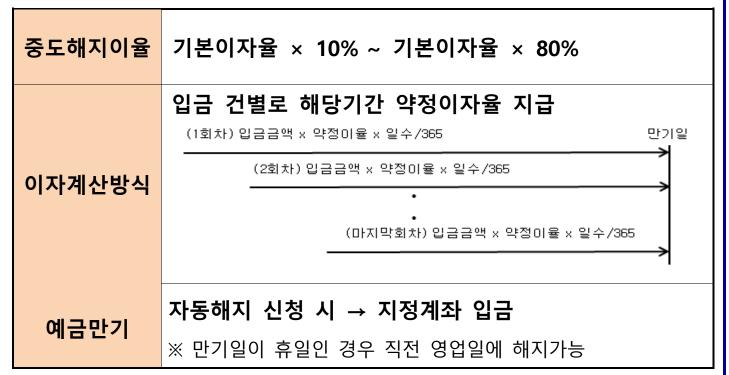


# 『파랑새적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### ■ 기본 정보

최고금리	연3.15%	'24.08.12 현재 (1년제 기준), 비대면우대이자율 포함 (자세한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)		
가입기간	6개월~5년	월단위로 가입 가능		
최저가입금액	월100원	최고가입금액	제한없음	
재예치	불가			
일부해지	불가			
예금담보대출	가능	납입액의 95%까지 가능		
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	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	
예금자보호		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		
		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

## ■ 유의 사항



※ 본 요약 상품설명서는 「파랑새적금」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, 반드시 자세한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# 『파랑새적금』상품설명서

- ♣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♣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 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♣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품명 : **파랑새적금** 

■ 상품특징 :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면 만기일에 계약금액(원리금)을 지급하는

정기적금

#### 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		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			
상품유형	• 정기적금			
	• 신규: 영업점, 인터넷뱅킹			
거래방법	• 해지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앱뱅킹			
	(단, 단체 및 법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. 해지 가능합니다.)			
가입금액	• 월적립금 100원 이상			
계약기간	• 6개월 ~ 5년(월단위)			
가입계좌수	• 제한없음			
	•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	
이자지급시기	• 연이자원가식 : 만기 시 이자를 원가하여 지급			
	• 연이자지급식 : 만기 시 이자를 지급			
연이자원가식 연이자원가식	1. 대상			
및	- 2년제 이상이고 계약금액이 2,000만원 이상인 계좌 중 고객이 신청한 계좌			
* 연이자지급식	2. 이자계산기준일 및 이자지급일 : 매년 가입해당일(계약기간 내)			
	3. 제외계좌 : 비과세종합저축 계좌			
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			
원금 및	(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		
이자지급제한	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)			
	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•출금•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	

## 거래 조건(계속)

2 거래 조건(계속)							
구 분			내 용		imbank		
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						
	만기지급식	6개월 이상 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 3년 미만	3년		
기부이다으		연2.45%	연3.10%	연3.15%	연3.25%		
기본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연이자원가식		3년 미만	연2.			
24.08.12현재	연이자지급식	3	년 - admitiation	연3.05%			
_ "	공통	3년 초과 5년	-3년 초과 기긴	:가입시점의 3년제 이자율(금리) 바 기간: 3년 초과 시점의 3년제 (금리)에 연동(변동금리)			
		※ 3년 초과시점의「3년까지」이자율 변경시에는 변경 전·후 일수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					
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						
			이율				
	만기후	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			약정이자율 x 50%		
미기호시되오	만기후		약정이자율 x 25%				
만기후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약정이자율 x 10%						
	약정	이자율X50%	약정이자율X25%	약정	g이자율 <b>X10</b> %		
	만기일 1개월미만 경과 3개월미안 경과 3개월이상 경과						
		※ 약정이지	ㅏ <mark>율은 만기시 확정된</mark> ○	자율 입니다.			
	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						
	이자를 합계						
만기이자	-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: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						
	(1회차) 입금금액 x 약정미율 x 일수/365 만기일						
산출근거	(2회차) 입금금액 x 약정미율 x 일수/365						
	-						
	· (마지막회차)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/365						

아이엠뱅크

## 거래 조건(계속)

2

구 분	내 용
계약해지방법	•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
	(단, 법인 및 단체는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)
	•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
	• 계좌의 만기가 휴일祭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
	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
	㈜휴일 :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
위법계약해지권	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
	금융소비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
	여부를 통지 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<b>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</b> 하여야 합니다.
	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
	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	·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
	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
휴면예금 및	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
출연	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
	·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
	니다.
연계•제휴서비스	해당사항없음

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아이엠뱅크 수신기획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66-5050, 1588-505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im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비대면채널로 가입하여 비대면 우대이자율(연0.05%p)이 추가적용된 계좌를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예금기간에 대해 비대면 우대이자율(연0.05%p)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, 중도해지이자율과
  만기 후 이자율은 경과기간 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,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## [부록] 예금 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	•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
압류	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
	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•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
	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
	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
	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/적금, 채권
	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•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
	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
	▪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
	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
	☞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